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3,046,818	15,691,405
일반회계	472,379,164	14,171,375
특별회계	50,667,654	1,520,030
공기업특별회계	42,622,804	1,278,684
상수도공기업	20,950,966	628,529
하수도공기업	21,671,838	650,155
기타특별회계	8,044,850	241,34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238	3,127
의료급여기금운영	1,023,800	30,71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58,980	16,769
공영개발사업	399,516	11,985
농공지구조성사업	2,422,977	72,689
기반시설	18,733	562
장기미집행	496,248	14,887
수질개선	433,642	13,009
주택사업	2,586,716	77,6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16,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